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 기체연료, 고체연료설비 등 각종 화재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산업현장에서 이루지는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용단 작업만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후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안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4. (생략)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u>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u> <u>는 적용하지 않는다.</u>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 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 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 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한다. 6~7. (생략)	[별표 1] 1~4. (현행과 같음)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후단 삭제>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 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 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 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한다. 6~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7451